

의안번호	제141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월 일 (제299회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1년 4월 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41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4월 4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도내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,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하며, 용어의 순화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순화 및 변경 (안 제명, 안 제2조, 안 제33조제1항제2호)
 - 제명 : “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”로 변경
 - 낙후지역”을 “성장촉진지역”으로 변경
-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13조제4항)
 - “2011년 12월 31일까지”에서 “2016년 12월 31일까지”로 연장
-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 (안 제17조)
 - 기금운용관 : 투자 유치 관련 국장
 - 분임기금운용관 : 투자 유치 관련 과장
 - 기금출납원 :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
-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조정(안 제27조)
 - 비수도권 신·증설 기업 지원 사항 포함
 - 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지원으로 하고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
- 성장촉진지역 공장 운영비지원 사항 신설 (안 제30조의2)
 - 3년간 오·폐수처리비용의 50%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지원
 - 3년간 제품 생산 및 판매 물류비용의 50%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 지원

- 3. 의안전문 : 불임**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**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**
- 6. 비용추계서 : 불 임**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”를 “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”로, 같은 조 제1호, 제3호,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, 같은 조 제2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8. “성장촉진지역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
제13조제4항 본문 중 “2011년”을 “2016년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.
 1. 기금운용관 : 투자 유치 관련 국장
 2. 분임기금운용관 : 투자 유치 관련 과장
 3. 기금출납원 :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

제27조제1항 중 “이전하는 기업”을 “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·증설

기업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”를 “설비투자 지원은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”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공장 운영비 등 지원) ① 도지사는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국내·외기업이 신설·증설·이전 투자로 인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해당공장 오·폐수 처리비용의 50%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
2.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%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

제33조제1항제2호 중 “낙후지역”을 “성장촉진지역”으로 한다.

별표1 대상란 중 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“낙후지역””을 “성장촉진지역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<u>용어의 정의는</u>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외국인투자”라 함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. 2.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. 3. “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”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. 4. “외국인투자지역”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. 5. “이전기업 및 서비스업”이라 함은 수도권 (“서울, 인천, 경기” 지역을 말한다)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(이하 “타 시.도”라 한다)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, 공장을 충청북도내(이하 “도내”라 한다)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. 6. “공장”이라 함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. 	<p><u>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<u>용어의 뜻은</u>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란 ----- 2. -----의란 ----- 3. -----란 ----- 4. -----의란 ----- 5. -----의란 ----- 6. -----의란 -----

현 행	개 정 안
7. “연구소”라 함은 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및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.	7. -----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8. “산업단지”라 함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.	8. -----란 ----- ----- ----- -----
9. “개별입지”라 함은 산업단지,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.	9. -----란 ----- -----
10. “본사”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.	10. -----란 ----- ----- -----
11. “서비스업”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의 대분류상 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.	11. -----이란 ----- ----- -----
12. “투자기업과 서비스업”이라 함은 도내에 이전·증설·신설 투자하는 기업과 서비스업을 말한다.	12. -----이란 ----- ----- -----
13. “집단화이전”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 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.	13. -----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14. “상시고용인원”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.</p> <p>가.~다. (생략)</p>	<p>14. -----이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15. “고용보조금”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·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.</p>	<p>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-----이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16. “교육훈련보조금”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·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.</p>	<p>16. -----이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17. “보조사업”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·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도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, 투자보조금,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	<p>17. -----이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18. “낙후지역”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.</p>	<p>18. “성장촉진지역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투자진흥기금) ①~③(생략)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1년</u>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투자진흥기금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2016년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7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 장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관련 과장이 된다.</p>	<p>제17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 한다. 1. 기금운용관 : 투자 유치 관련 국장 2. 분임기금운용관 : 투자 유치 관련 과장 3. 기금출납원 :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)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<u>이전하는 기업에</u>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「<u>지방</u> <u>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</u> <u>재정자금 지원기준</u>」(이하 “<u>지원기준</u>”이라 한다.)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·시설장비구입비· 기반시설설치비 등(이하 “<u>투자</u>”라 한다.)을 포함한 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(생략)</p>	<p>제27조(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) ① ----- ----- <u>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·증설</u> <u>기업</u> ----- 「<u>지방자</u> <u>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</u> <u>재정자금 지원기준</u>」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 <u>설비투자 지원은 지원기준에</u> <u>의거 예산의</u> ----- ---. ③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<신설></p> <p>제33조(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도내 낙후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0조의2(공장운영비 등 지원) ① 도지사는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국내·외 기업이 신설증설 이전 투자로 인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해당공장 오·폐수 처리비용의 50%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</p> <p>2.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 비용의 50%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</p>								
<p>[별표 1] 수도권 내 대상지역(제27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대 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;">수도권</td> <td style="padding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생략) ◆ (생략) ◆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“낙후지역”은 제외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대 상	수도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생략) ◆ (생략) ◆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“낙후지역”은 제외 	<p>제33조(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성장촉진지역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 수도권 내 대상지역(제27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대 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;">수도권</td> <td style="padding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현행과 같음) ◆ (현행과 같음) ◆ ----- 성장촉진지역 및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-----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대 상	수도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현행과 같음) ◆ (현행과 같음) ◆ ----- 성장촉진지역 및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-----
구 분	대 상								
수도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생략) ◆ (생략) ◆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“낙후지역”은 제외 								
구 분	대 상								
수도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현행과 같음) ◆ (현행과 같음) ◆ ----- 성장촉진지역 및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----- 								

관련 법령 발췌

□ 헌법

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1. ~ 2. (생략)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 가. 소류지(소유지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
 다. 농업자재의 관리

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 사. 공유림 관리

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 자. 가축전염병 예방

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 타. 중소기업의 육성

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~ 6. (생략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오폐수처리비, 물류비 50% 범위에서 3년간 보조(안 제30조의2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지난 5년간('06~'10) 지원실적을 기초로 산출
- 수도권이전기업을 제외한 도내 투자기업 지원 업체수 기준으로 산출
- 오폐수처리비는 1일 배출 200톤, 처리비용 3,000원/톤을 기준으로 산출
- 연간매출액 100억인 업체, 매출액 대비 10%의 물류비 기준으로 산출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업체 운영비(오폐수처리비, 물류비) 산출
 - 오폐수처리비(1개 업체 발생 오폐수 처리비용- 3년)
 - 200톤 × 3,000원 × 365일 × 3년 = 657백만원
 - **보조금 지원 한도** : 657백만원의 50% 범위내인 최고 **300백만원**
 - 물류비(연간 매출액 100억원인 업체의 물류비용 - 3년)
 - 10,000백만원 × 10% × 3년 = 3,000백만원
 - **보조금 지원 한도** : 3,000백만원의 50% 범위내인 최고 **1,500백만원**
- 보조금 소요액 산출
 - 성장촉진지역 보조금 지원예상(1년) 업체수 : 1개 업체
 - '06~'10년(5년간) 보조금 지원 : 14개 업체(년 : 3업체정도- 일반지역 투자업체)
 - 성장촉진지역은 연간 1개 업체 지원 예상
 - **보조금 소요액(1년) : 600백만원(도비 300백만원, 군비 300백만원)**

4. 작성자 :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담당 정 효 진 (220-3311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

1. 부문별 재원분담계획

(단위 : 천 원)

구분	연도	2011년도	2012년도	2013년도	2014년도	2015년도	합계
합 계		600,000	1,200,000	1,800,000	1,800,000	1,800,000	7,200,000
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	도 비	300,000	600,000	900,000	900,000	900,000	3,600,000
	군 비	300,000	600,000	900,000	900,000	900,000	3,600,000

2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- 도·군비 일반회계 예산
- 3. 부대의견 : 없음
- 4. 협의사항 : 없음
- 5. 작성자 :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담당 정효진 (220-3311)